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6. 4. 2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4. 8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4. 15.

다. 상정일자: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26. 4. 22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체육진흥과장 정철수】

### 가. 제안이유

- 우리구에 설치되는 물놀이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구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 및 적용 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설치·운영 및 유지관리(안 제4조~제5조)
- 위탁운영 및 이용료(안 제6조~7조)
- 이용제한 및 보험가입(안 제8조~제9조)

## 다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1)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5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)
- 2) 「관광진흥법」 제32조(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)
- 3)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9호(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)

### ○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### ○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### ○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6. 3. 5.~2026. 3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## 3. 검토보고(전문위원 권하나)

### 가. 제정 목적 및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 물놀이장의 설치·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- 최근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주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 내 물놀이장,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 등 계절형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안전관리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- 마포구는 지난해 여름 공원·광장 등 6개소에서 물놀이장을 운영<sup>1)</sup>하였고, 상암동 '통통통 마을축제'에서도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 등이 운영되는 등 물놀이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- 다만 물놀이장이 공원·축제 등 다양한 사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이에 따라 관내 물놀이장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물놀이장의 설치 및 운영, 안전관리, 위탁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특히 안전요원 배치, 이용 제한, 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 안전 확보 측면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## 나. 주요 내용 검토

- 본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, 적용 범위, 설치·운영, 시설의 위탁운영, 이용 및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1) 연합뉴스(2025.7.23.) : '엄빠랑 물놀이'...마포구 6곳에 무료 물놀이장 운영

마포구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장을 6곳에 설치하고 '2025 엄빠랑 물놀이' 행사를 오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. 물놀이장은 마포구청 앞 마포구민광장, 레드로드발전소, 마포새빛문화숲, 양화어린이공원, 토정공원,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운영된다. 에어수영장,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시설과 함께 그늘막, 탈의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갖추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. 기상악화 시 휴장할 수 있다. 지역 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가 이용 대상이다. 단, 7세 이하 아동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. 장소별 운영 시간이나 휴장일 등 자세한 내용은 방문 전 구청 누리집 또는 마포구 공식 블로그 등을 참고하면 된다. 아울러 오는 26일 구릉근린공원에서 상암동 대표 축제인 '통통통 물통통 마을축제'가 열린다. 수영장과 워터슬라이드는 물론 물총놀이, 푸드트럭 등이 준비된다.

## 〈조례안의 조문 체계〉

조 항	조 제목	조 항	조 제목
제1조	목적	제6조	시설의 위탁운영
제2조	정의	제7조	이용 및 이용료
제3조	적용 범위	제8조	이용 제한
제4조	설치 · 운영	제9조	보험 가입
제5조	유지 · 관리 등	부칙	

### (1)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(안 제1조~제2조)

-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물놀이장, 이용자, 안전요원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적용 대상과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음.

### (2) 적용 범위 및 설치·운영 규정 (안 제3조~제4조)

-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구청장이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물놀이장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4조에서는 물놀이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,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물놀이장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, 운영 기준 변경 시 이용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게시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.

### (3) 유지관리 및 안전요원 배치 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서는 수질 관리와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를 명시하여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.

### (4) 시설의 위탁운영 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서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위탁 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.
- 이는 기존 민간위탁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입법기술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물놀이장은 계절성·단기 운영 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위탁 기간, 운영 방식, 안전관리 책임 등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아울러 단기간 운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### (5) 이용 및 이용료 규정 (안 제7조)

- 안 제7조에서는 물놀이장을 원칙적으로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되, 위탁 운영 시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별표에서는 이용료 상한을 청소년 2,000원 이하, 성인 3,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, 단체 이용 시 인솔자 무료 기준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. 또한 사물함 이용료, 물놀이용품 대여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[별표]

### **이용료 등(제7조제3항 관련)**

이용료 기준			
대 상	구 분	요 금	비 고
청소년	14세~18세	2,000원 이하	20명 이상 단체 이용 시 인솔자 무료 (20명당 1명)
성인	19세~64세	3,000원 이하	

※ 이용료와 별도로 물놀이장 운영에 필요한 사물함 이용료, 물놀이용품 대여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음

- 이는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위탁 운영 시 일정한 운영비 확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, 구체적인 이용료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.
- 참고로 서울 구로구, 종로구, 노원구, 경남 창원시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무료 운영하되 위탁 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다만 이용료 부과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이용자 접근성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, 운영 여건과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(2026. 4. 13. 기준)

- 전 국: 48개 시·도 및 시군구에서 제정하여 시행 중임.
  - 서울 구로구, 종로구, 노원구, 경남 창원시는 원칙적으로 이용료를 무료로 정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의 경우 징수할 수 있도록 함.
  - 대구광역시 동구, 울산광역시 중구, 충북 충주시, 전남 무안군, 경북 구미시·포항시·칠곡군은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함.
  - 전남 나주시는 이용료 대신 주차료를 징수하고, 충남 금산군과 경북 경주시는 필요시 징수토록 규정함.

### (6) 이용 제한 및 보험가입 (안 제8조~제9조)

- 안 제8조에서는 음주자, 전염성 질환자 등 이용 제한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9조는 물놀이장의 관리주체로서 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,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▶ 주민 여가시설 운영 근거 마련, ▶ 이용자 안전 확보, ▶ 위탁운영 근거 마련 등의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물놀이장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, 「관광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시설로서, 설치·운영·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여러 부서가 관여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할 때,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 운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- 다만 물놀이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, 향후 운영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와 이용자 보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계절성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 효율성, 이용 수요 및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합리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 세부 운영 기준은 향후 규칙 및 운영계획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**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**

제15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) 관리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, 안전요원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 7. 26.>

[본조신설 2016. 1. 7.]

**□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**

제16조의2(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7. 26., 2019. 5. 15., 2023. 2. 6.>

1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

2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

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

5.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

6.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
2.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
3.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
4.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
〔본조신설 2016. 8. 12.〕

## □ 「관광진흥법」

제32조(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준수사항)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(이하 “테마파크업자”라 한다)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·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. <개정 2024. 2. 27.>

## □ 「물환경보전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27., 2017. 1. 17., 2018. 10. 16., 2021. 4. 13., 2024. 2. 27., 2025. 10. 1.>

19. “물놀이형 수경(水景)시설”이란 수돗물,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, 연못, 폭포,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.

가. 「관광진흥법」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

나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다.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

〔전문개정 2013. 7. 30.〕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